2024년도 제23차

금융통화위원회(임시)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자 2024년 12월 4일(수)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창 용 의 장 (총재)

신 성 환 위 원

황건일 위원

김 종 화 위 원

이 수 형 위 원

4. 결석위원 장 용 성 위 원

유 상 대 위 원 (부총재)

부총재보

5. 참 여 자 김 언 성 감 사

김 웅 부총재보

권 민 수 부총재보

이 재 원 경제연구원장

장 정 수 금융안정국장

최 용 훈 금융시장국장

김 기 원 발권국장

백 무 열 법규제도실장

김 용 식 공보관

채 병 득 부총재보

이 종 렬

박 종 우 부총재보

10110

이 지 호 조사국장

최 창 호 통화정책국장

이 병 목 금융결제국장

윤 경 수 국제국장

임 건 태 금융통화위원회실장

허 현 의사팀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장이 긴급발의로 의결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관련 부서가 전일 및 금일의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해 고려하고 있는 정책 수단에 대해 보고하였음.

관련 부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였다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상승폭이 일부 축소되었고 CDS프리미엄은 등락 후 전일 수준을 유지하는 등 불안심리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해외 상장된 국내기업의 주가 및 국내 야간 주식선물은 큰 폭 하락하였다가 하락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였다고 보고하였음. 한편 불안심리로 인한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가능성에 대비하여 순이체한도 소진율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그 결과 평상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첨언하였음. 금번 사태의 경제적 영향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어 파급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과거 탄핵시 가계및 기업 심리가 위축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관련 부서에서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활용 가능한 모든 시장안정화 조치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음.

국내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금일부터 비정례 RP매입을 실시하여 단기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며, 필요시 전액공급방식의 RP매입을 실시하고 채권시장과 관련해서 국고채 단순매입, 통안증권 환매를 충분한 규모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음. 아울러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RP매매 대상증권에 은행채, 특수은행채 및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한시적 으로 포함하는 한편 RP매매 대상기관도 은행 전체 및 증권사 전체를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금통위의 의결이 필요하다 고 첨언하였음.

또한 상황이 악화되어 한국은행법 제64조 및 제80조에 의거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통위 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보고하였음.

외환시장과 관련하여 환율 급변동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경쟁 입찰방식 외화대출, 외환스왑, 외화 RP 매입 등을 통해 필요시 적기에 외화유동 성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였음. 아울러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외환건전성 규제를 단계별로 완화하는 조치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한편 원활한 지급결제를 위해 금융기관의 순이체한도 확대 및 담보 설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음.

종합하면 금일부터 비정례 RP매입을 시작할 계획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유동

성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RP매매 대상증권 및 대상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음. 이와 더불어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하는 한편 필요시 다양한 추가 수단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첨언하였음.

이에 대해 일부 위원은 과거에도 증권사 전체로 RP매매 대상기관을 확대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조치의 실익이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 관련 부서 에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RP매매 대상기관을 증권사 전체로 확대한 사례는 없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조치를 통해 단기유동성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정책당국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필요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금융·외환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당행의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들은 RP매매 대상증권 및 대상기관 확대 조치 실시 기간을 특정일까지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할지, 아니면 추후 시장이 안정되면 조치를 종 료하는 것이 적절할지 관련 부서에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동 조치를 약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답변하였음.

<의안 제37호 - 공개시장운영규정 개정(안)>

(1) 의장이 긴급발의로 의안 제37호를 상정하였으며,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28조 제6호 및 제68조에 의거 필요시 신속한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할수 있도록 금융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경로를 확충하기 위해 당행의 환매조건부 증권매매 대상증권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공개시장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공개시장운영규정」개정(안)(생략)

<의안 제38호 -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기관 추가 선정(안)>

- (1) 의장이 긴급발의로 의안 제38호를 상정하였으며, 담당 부총재보가 「공개시장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기관을 추가로 선정하고자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 (2)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기관을 붙임과 같이 추가로 선정한다. <붙임>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기관 추가 선정(안) (생략)